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03.

제안자 : 함명섭의원 외 2인

## 1. 제안이유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문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 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단,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규 발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耽◆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 면적(최저)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 ~ 15㎡
2) 개인택시	10㎡ ~ 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 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b>

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마련 [별표2]의 1번

- 일반직의 직급별 비율은 기존 대통령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마련 [별표2]의 2번

구 분	총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재정원	85	2	7	13	27	36
현재비율	100%	2.3%	8.2%	15.3%	31.8%	42.4%
대통령령	100%	3%이내	9%이내	16%이내	32%이내	40%이상
개정(안)	100%	5%이내	15%이내	23%이내	33%이내	24%이상
증 감		+2%	+6%	+7%	+1%	-16%

- 기능10급의 비율을 16% 감하여 기능6급 2%, 기능7급 6%, 기능8급 7%, 기능9급 1%로 상위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총 14개(기능6급 2, 기능7급 5, 기능8급 6, 기능9급 1)의 상위 직급 정원 증가하여 총 18명 승진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 추계치는 약 39백만원(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
- \* 조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능직의 근속승진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 일반승진자는 예상수치보다 적을 수 있음.

라. 연구·지도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마련 [별표2]의 3번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재정원	-	1명	1명	19명
현재비율	-	100%	5%	95%
대통령령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개정(안)	-	100%	5% 이내	95% 이내

증 감	△3%	+3%	△3%	+3%
-----	-----	-----	-----	-----

- 연구관 정원 3%을 감하고, 현정원에 맞게 연구사 비율 100% 책정
- 지도관 정원을 3% 감하고, 현정원에 맞게 지도관 5%이내, 지도사 95%이내 책정
- 『공공기록관리법』에 따라 기록연구사 정원 확보(연구사 정원 + 1)  
⇒ 기능직 정원 △1

마.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마련 [별표2]의 4번

구분	총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재정원	16명	-	15명	1명	-	-
현재비율	100%	-	93.75%	6.25%	-	-
대통령령	100%	7% 이내	50%이내	29%이내	12%이내	2%이상
개정(안)	100%	-	100%	-	-	-
증 감	-	△7%	+50%	△29%	△12%	△2%

- 정원에 없는 5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의 비율은 모두 감하고, 7급상당의 29%이내를 감하여 6급 상당 비율 100% 책정
- 7급상당 현원 1명 승진 가능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 붙임
-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다.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09.12.18 ~ 2010.01.07(20일간) 제출의견 있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83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7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 고용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80% 이상	17% 이내	3% 이내

- 비 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이내	27%이내	31%이내	24%이내	11%이상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5%이내	15%이내	23%이내	33%이내	24%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5% 이내	95% 이내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0%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83	58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60	460				
4급	2	1		1		
4~5급	2	2				
5급	24	9	2	4	1	8
6급 이하	432	43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1			1		
지도사	19	19				
별정직 계	16	16				
6급상당 이하	16	16				
기능직 계	84	84				
기능6급 이하	84	84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④(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생략)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에 비해 하위직급으로의 쏠림이 너무 심하고, 근속승진이 아니면 승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li> <li>○ 인근 시 지역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을 유사하게 개정함.</li> <li>○ 기능직도 상위직급의 비율을 현 비율보다 증가시켜 달라는 의견</li> </ul>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기간 비교 : 기능직 하위직급 근속기간 장기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급 평균 근속기간 : 기능10급 6년2월, 일반직 9급 3년5월</li> <li>- 최초임용 평균 재직기간 : 기능9급 12년, 일반직 8급 6년</li> </ul> </li> <li>○ 근속승진율 : 평균 7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9급 근속승진율 : 83.3% (6년소요)</li> <li>- 기능8급 근속승진율 : 86.7% (7년소요)</li> <li>- 기능7급 근속승진율 : 53.3% (8년소요)</li> <li>* 일반직 근속승진율 18.3%</li> </ul> </li> <li>○ 최초임용 및 현직급 재직기간, 근속승진율 등을 고려하되, 일반직의 상위직급 비율 상향조정이 고려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정원기준 상위직급 6명 책정안을 재검토하여 정원기준 상위직급 14명으로 조정 반영하여 기능직의 승진 적체 일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li> </ul>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같은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의견 반영함.</li> </ul>